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3일,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1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규태

나. 제안이유

○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단서 조항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 1)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변경하고, 단서조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위법 개정 규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변경한다.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

나. 주요내용

-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u>시행한 날</u> 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u>존속기한</u> 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7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u>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u> 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의 “존속기한” 을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으로 개정함

다. 종합의견

- 2013년 4월 11일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조례에 존속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기한이 2023년 4월 10일을 기하여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음
-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기금법」 제4조제2항에서 존속기한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시행 2013. 3. 2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개정 2015. 7. 24.]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본 조례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구분							
세출	비용자성사업	28,285,335	33,759,778	31,846,920	29,167,966	29,131,183	152,191,182
	기본경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소계 (1)	28,295,335	33,769,778	31,856,920	29,177,966	29,141,183	152,241,182
세입	교특전입금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0
	이자수입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소계 (2)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0
총 비용 (1-2)		22,295,335	27,769,778	25,856,920	23,177,966	23,141,183	122,241,182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세출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구분							
비용자성 사업	환경개선	1,288,078	5,937,251	5,650,017	5,465,070	8,501,287	26,841,703
	교육활동	23,859,561	25,621,847	24,070,653	21,869,583	19,165,026	114,586,670
	폐자학구학생	3,137,696	2,200,680	2,126,250	1,833,313	1,464,870	10,762,809
기본경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계		28,295,335	33,769,778	31,856,920	29,177,966	29,141,183	152,241,182

나. 세입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교특전입금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0
	이자수입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계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0

※ 산출기초

- 교특전입금: 연도별 분교장 통폐합 교당 20억씩 2교 통폐합 예상(연간 40억)
- 이자수입금: 연도별 통폐합지원금 예치금 2,000억 연리 1.0% 추산(연간 20억)

○ 2013~2022년 연도별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022년도말 결산기준, 단위: 천원)

연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학교전출금	반납금	기본경비	
2013	22,000,000	22,000,000		0				22,000,000
2014	37,418,391	36,000,000	1,418,391	6,496,364	6,494,160		2,204	30,922,027
2015	28,301,332	27,000,000	1,301,332	6,646,076	6,643,761		2,315	21,655,256
2016	89,434,212	87,000,000	2,434,212	11,225,206	11,221,939		3,267	78,209,006
2017	95,820,035	93,220,000	2,600,035	19,465,193	19,462,426		2,767	76,354,842
2018	31,076,731	31,000,000	76,731	15,637,446	15,635,409		2,037	15,439,285
2019	32,565,494	32,000,000	565,494	25,075,876	25,073,221		2,655	7,489,618
2020	38,058,209	29,000,000	9,058,209	22,044,269	22,042,627		1,642	16,013,940
2021	14,663,638	10,373,098	4,290,540	16,616,105	23,776,672	-7,161,386	819	-1,952,467
2022	9,966,779	7,327,547	2,639,232	21,391,683	27,572,698	-6,203,782	22,767	-11,424,904
계	399,304,821	374,920,645	24,384,176	144,598,218	157,922,913	-13,365,168	40,473	254,706,603

○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향후 5년간 3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비융자성사업 등 세출에 대한 비용추계액은 152,241,182,000원으로 세입추계액보다 세출 추계액

이 높음

2022년말 잔액 기준 254,706,603,000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비융자성사업 및 기본경비 지출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매년 60억원(교특전입금 40억원, 이자
수입 20억원), 향후 5년 동안 총 300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
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초 2022년에는 16,170,561,000원(교특
전입금 13,531,329,000원, 이자수입 2,639,232,000원)을 조성하
였으나 6,203,872,000원을 반납하여 실질적 기금은
9,966,779,000원으로 이와 비교해 볼 때 향후 5년간 세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기준 16,170,561,000원(조성액 9,966,779,000원, 반납
액 6,203,782,000원)

- 비용추계서에 따른 세출예산 중 환경개선, 교육활동, 폐지학
구학생 등 비융자성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추계는 「2022년
도 제3회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참고 : 「2022년도 제3회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
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 비용추계서와 2022년말 기금 잔액(254,706,603,000원)을 기준
으로 향후 5년간 세입과 세출 비용추계 내역을 반영하는 경
우 2027년말 기금잔액이 132,465,421,000원이 발생함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¹⁾
2028년 이후 세출예산 추계액을 108,180,289,000원으로 추정

¹⁾참고 : 「2022년도 제3회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2022년말 기금잔액(254,706,603,000) + 5년간세입추계(30,000,000,000)
- 5년간 세출추계(152,241,182,000) = 132,465,421,000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